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공고 제2024-74호

# 청양군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수탁자 모집(2차) 공고

재단법인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양먹거리종합타운 內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운영관리할 수탁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(2차) 합니다.

2024. 9. 19.

(재)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이사장

## Ⅰ 공고에 부치는 사항

1. 건 명: 청양군 「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」 수탁운영자 모집(2차)

2. 위탁시설 대상

| 시설명 | 사용재산 | 면적(㎡) | 사용목적 | 소재지 |
|---|---|---|---|---|
|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| 건물 (대지포함) | 490.153 | 식품제조가공 |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454 |
| | 물품 | 열풍건조기 등 53품목 (고추 · 표고 가공시설) | | |

※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.

3. 사용 · 수익 허가 기간: 계약일로부터 2년간

※ 재단이 청양군으로부터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종료일은 2025년 7월 29일이며, 청양군으로부터 재단이 재위탁을 받을 시 이 계약 기간의 효력은 유효함.

## 4. 시설 사용료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.

## 5. 사용목적

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청양군 친환경 농산물(고추, 표고버섯 등)의 생산유도 및 가공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브랜드가치 향상, 바른 먹거리 문화 선도,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,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

## 6.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사용조건(계약조건)

| 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|---|---|---|
| 가공원칙 | •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함<br>• 청양산 농산물이 없을 시 충남산, 국내산 순으로 사용 가능하며, 수입농산물은 사용 불가 | **친환경농산물 사용** 및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공의 원칙 |
| 지속 가능한 농업 | • 관내 생산 농산물 우선 수매 등 청양군 농산물 소비 촉진 노력 |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 |

- 시설 전대 시 사용료 선납 부담(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)
-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6항에 따른다.
- 기존 건축물 내 운영에 필요한 추가 시설 조성비와 운영자의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한 시설 개보수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해야 함.

※ 상기 표기된 사항은 계약 시 합의하는 내용에 따름

## 7. 유의사항

-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, 사용자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(10%)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는 충청남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청양 친환경농산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보조금 시설이며 지원 목적을 준수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운영하여야 함. (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변경 사용 불가)

- 현장설명 및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, 운영 수익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으니, 신청서 제출 전에 필히 시장 조사를 하시기 바람.
- 식품제조가공 영업에 필요한 허가 절차는 선정된 법인이 직접 수행해야 함.

## Ⅱ 참가자격

### 1. 참가자격 : 가호~라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

가. 청양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친환경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사회적기업으로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있어야 함(정관의 주요사업에 농산물 가공사업 포함)

**※ 친환경 관련 법인·단체 등 우대**

나. 식품위생법 제38조(영업허가 등의 제한)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다.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자

라. 약정이행 의무를 재단 운영 규정에 맞게 성실히 운영 가능한 자
(신청자는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)

수탁자는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·설비의 설치, 부수 장비 유지, 개·보수를 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할 수 없으며, 비용 발생 시 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 또한 수탁 기간 중 망실 또는 폐기되는 소모 장비에 대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
※ 제외대상
- 타 법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
- 청양군 및 타 지역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
-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

※ 수탁자 선정 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,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

## Ⅲ 공고 및 서류접수 일정

1. **공고기간**: 2024. 9. 19.(목) ~ 2024. 9. 25.(수) / 7일간

2. **서류접수**: 2024. 9. 20.(금) 09:00 ~ 2024. 9. 26.(목) 18:00 / 7일간

3. **접수방법** : 전자우편(ssyskh@ccf.or.kr) 및 방문접수

4. **접 수 처**: (재)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케팅팀(방문접수)

   ※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426-32 (☎041-943-2026)

5. **서류심사 결과발표** : 2024. 9. 27.(금)

   ☞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및 청양군 누리집

   ※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6. **제출서류**(각 1부)

 1) 수탁운영 신청서 1부

 2) 참가 자격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 등) 1부

 3) 사업 운영계획서(자유양식 A4 15장 내외) 1부

| 사업 운영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| | |
|---|---|---|
| 1. 필요성 및 목적 | | A4 15장 내외 |
| 2. 사업계획 | 2-1) 생산계획<br>2-2) HACCP 및 시설 운영・관리계획<br>2-3) 마케팅계획<br>2-4) 원료공급계획<br>2-5) 인력 및 조직관리계획<br>-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시설 및 기술수준<br>- 재정적 부담능력<br>- 관련분야의 전문성, 농산물 가공사업 실적 등<br>2-6) 운영활성화 계획 및 방안 | |
| 3. 관련 사업실적 | 실적증명서 불필요 | |
| 4. 기대효과 | | |

 4) 법인(단체) 등기부등본, 정관 각 1부

  ・ 정관의 주요사업에 농산물 가공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

5) 법인(단체) 인감증명서 1부. 인감도장 확인(또는 사용인감)

6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
7) 법인(단체)현황(임원, 기구, 자산현황, 소개서 등) 1부.

8) 조합원 및 주주명부, 참여인력 프로필 각 1부

9) 서약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기타 참고자료 각 1부

*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

**7. 사용·허가 후 제출서류** (영업개시 7일 이내)

- 영업신고증 사본 1부.
- 손해보험증서(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1억, 1사고당 10억을 보상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, 시설일체 1억 집기비품 일체 5천만원을 보상하는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보험 등)

**8. 공고원칙**

- 1개 기관 신청 시 재공고하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
  (관련근거: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, 제26조 1항)

> **제12조(입찰의 성립)**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.
>
> **제26조(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,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·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·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,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Ⅳ 면접심사 및 선정방법

**1. 심사일정**: 추후 개별 통보

**2. 심사장소**: (재)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회의실

**3. 심사방법**: 수탁운영자 평가표 참조(별첨6)

- 1차 서류심사(수탁 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)
- 2차 면접(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심사 평가)
-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평가 최고점수를 득한 자(법인)를 선정.(단,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위원의 협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.)
- 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적격한 법인(단체)이 없는 경우 미선정, 재공고 할 수 있다.

4. **심사결과**: 재단 누리집 게재(http://www.ccf.or.kr)

## Ⅴ 사용·수익 허가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

1.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합의된 기일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 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2. 계약서 작성일 이후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선정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개시일 이전에 사용료(부가가치세 포함) 1년분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함
3.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체결은 무효로 함
4. 선정자가 사용·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영업개시 전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차순위 선정자로 결정
5.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고에 응하였거나 아래의 경우 무효처리 됨
  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을 방해 또는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
   - 해당 공동체가 해산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   - 신청자격이 없거나, 서류미비,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 무효

## Ⅵ 기타사항

1.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

2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. 다만, 공고기관의 요청 시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3.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단체는 모집공고, 관계 법규 및 현지여건 등을 사전 충분히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, 관련 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단체에 있음.
4.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.
5. 선정 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, **참가자는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458-6번지 내 건물 상태, 주변여건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람.**
6.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 절차, 평가점수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이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재단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7.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결정에 따라야 함.
8. 기타 문의사항 : (재)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케팅팀(☎ 041-943-2026)